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판결서 열람신청권자 확대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1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V. 관계기관 의견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등을 통해 판결서의 방문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판결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의 판결서 열람·복사, 제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결서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 162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소송기록 열람신청권자 확대

개정안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 없이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생략)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 <u>대법원규칙으로</u>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민사소송법」 제162조¹⁾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소송관계인”이라 함)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송관계인이 아닌 자는 당해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개정안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소송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대한민국헌법」 제21조²⁾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³⁾

④ ~ ⑥ 생략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소송기록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와 소송기록 전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소송기록 열람신청권자 확대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둘째, 판결서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⁴⁾에 따라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송기록은 판결서보다 그 분량이 훨씬 많으므로 소송기록의 열람

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4)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과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 등

개정안은 법원이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163조의2제5항 신설 및 같은 조 제8항),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한다.</u>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법원 규칙으로</u> 정한다.	⑧ ----- ----- ----- <u>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u> -----.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 등이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서 열람·복사비용의 면제와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의 열람·복사 비용을 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액을 2027년 10억 8,900만원, 2031년 10억 8,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4억 4,500만원으로 추계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안 제59조의3)	1,089	1,089	1,089	1,089	1,089	5,445	1,0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료를 무료로 하게 되면 연평균 10억 8,900만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고,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장애인 등에 대한 선고방식

개정안은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서를 읽거나 점자로 된 판결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6조(선고의 방식) (생략)	제206조(선고의 방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

	<u>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u> <u>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u> <u>판결서를 읽거나 점자로 된 판결서</u> <u>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u> <u>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u>
--	---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함)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1월에 발효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바, 이를 계기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장의 필요성이 커짐.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에서는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두고 있음.⁵⁾

또한, 법원은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재판예규 제316호)」에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⁶⁾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정신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판결문의 작성 및 송달과 관련한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⁷⁾

-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1991. 2. 7. 제정, 재판예규 제316호)」

1.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의 목적과 방향 가. 판결서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서에는 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짧게 세분하여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나. 판결서에는 형식적 기재, 중복기재, 무익한 기재등을 생략하여 그 기재에 들던 시간과 노력을 변론의 충실과 심리의 촉진에 경주한다.

7)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p.114)」

당사자가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 판결의 내용과 상소기간, 상소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여 상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참조).

당사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정본을 송달할 때 기본적인 종이서류를 송달하는 이외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사법지원 신청 당시 신청한 형태로 변환한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보에 음성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다. 판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로서 text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므로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음성변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원 또는 법관이 장애인인 소송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본인 사건의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별도의 조력 수단이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애초에 판결서를 이해하기 위한 조력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 비장애인인 소송당사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설령, 장애인인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조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당사자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및 상호 의사소통의 대안 내지 보강수단(점자, 수화, 쉬운 언어,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을 개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⁸⁾

8)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법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제한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CRPD/C/KOR/CO/1, 제24항)을 참조하고 2020년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발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6.3을 상기하며

개정안은 소송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서를 읽거나 점자로 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법관으로 하여금 선고기일에 출석한 장애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쉬운 말로 요약하여 읽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장애’가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장애의 정도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을 통해 구별되고 있음.⁹⁾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협약에 따라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 (b) 장애인이 다양한 측면의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 절차적 조정을 마련할 것.
- (c)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와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 시설에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접근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 (d) 법관과 사법 종사자에게 협약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 (e)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마련할 것.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비장애인과 지적·정신적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신체 장애인 등의 소송당사자에게까지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판결을 설명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늦추어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장애가 있는 소송당사자에게 이른바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점자·수화·오디오 및 비디오 등의 별도 보장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이러한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지를 소송당사자가 가진 장애의 종류 및 정도, 그리고 당사자의 요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IV.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없어도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162조 제2항)에 대해서는 특별열람실 이용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영업비밀,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며, 국민의 소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사법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개정안(안 제163조의2제6항)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현재 부과되는 수수료는 판결서 공개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대가이며, 수수료는 판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판결 정보를 활용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측면도 있다는 이유로 추가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이며,

그 밖에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게 판결서 열람·복사 시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안 제163조의2제5항)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안 제163조의2제8항) 및 판결선고 시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서를 읽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안(안 제206조제2항)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